

## 목포시기초생활보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4월 7일 강 성 휘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01년 4월 13일
- 다. 상정일자 : 2001년 4월 14일

### 2. 제안설명요지

#### 가. 제안설명

- 본 회 의(제1차) : 강 성 휘 의원
- 총무사회위원회 : 강 성 휘 의원

#### 나. 제안이유

- 지난 2000년 11월 27일 목민협등 6개 시민단체가 제정 청원한 조례안으로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의원 발의를 통해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가 결되어 발의하게 되었음.

#### 다. 주요내용

- 본조 7개 조항과 부칙 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핵심사항은 9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회 구성 및 전체위원중 민간인 비율을 2분의 1이상으로 한 것임.
-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 서명 보관하도록 하고, 목포시보와 목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하며,
- 목포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구성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임.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생 략”

### 4. 위원회 활동

- 제96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(2001. 4. 14)

- 조례안 제안의원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·응답

o 제97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(2001. 4. 16)

- 안건검토 및 심사의결

5. 토론요지

o 2000년 11월 27일 목민협등 6개 시민단체에서 제정 청원한 조례로서 민간인 참여 확대와 회의사항을 투명하게 시보나 시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개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책임성을 높일수 있도록 제안된 조례인바 「수정가결」 키로 하였음.

6. 심사결과

【 수정 가 결】

⇒수정내용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구성)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8인이상 14인 이내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제1~6호에 해당하는 자의 비율을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구성) ----- -----9인이상 15 인 ----- ----- ----- .</p>
<p>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	<p>제 7 조 ( 운 영 세 칙 ) ----- ----- ----- ----- .</p>